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19

발의연월일: 2020. 7. 2.

발 의 자:이해식·진선미·위성곤

신정훈 • 주철현 • 문진석

김진애 · 이상직 · 양향자

박영순 · 양정숙 · 이학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세상인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 서 발급 의무, 장부 기장 의무 등을 면제하고 납세액 산정 및 납세 절 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의 지속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80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대상이 매년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6,0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여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 1항 및 제69조제1항).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천800만원"을 "6천만원"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3천만원"을 "4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 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 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	
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u>4천800만원</u> 이상 같은 금액의	<u>6천만원</u>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	
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	
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
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의무의 면제) 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	
가의 합계액이 <u>3천만원</u> 미만이	<u>4천만원</u>
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	

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	
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